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. 1. 17 선고 2018가단187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18. 12. 13.

판결 선고2019. 1. 17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전북 부안군 D 대 486m²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5. 8. 2. 접수 제115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85819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9. 8. 14.

'36,911,607원 및 그 중 10,042,5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9. 9. 11. 확정되었다. C은 2005. 8. 2.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E, 근저당권자 피고, 채권최고액 2,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, 근저당권설정자인 C은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,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이민형